

# 생산물량 조절, 질병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등록제 시행 기대...

– 생산자 단체와 연계된 등록제 시행 필요성 제기 –

◇ 취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 1. 양계업 등록제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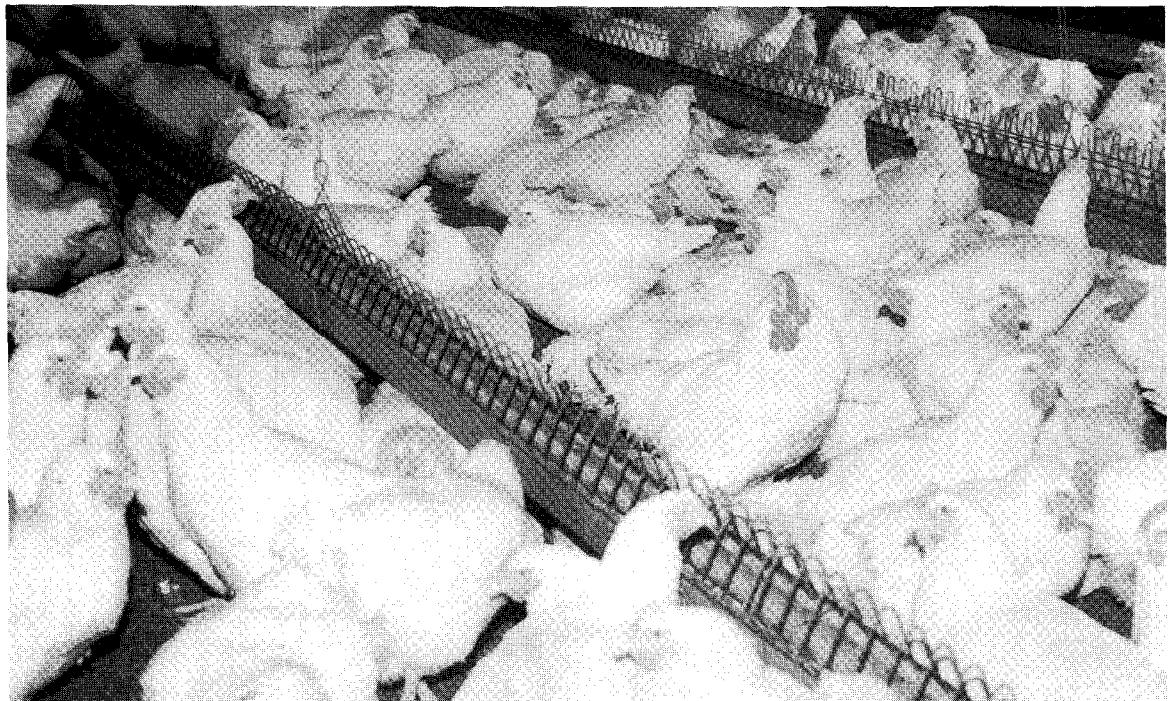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본 사항이 지난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 전환 또는 폐지되었던 제도가 다시 등록제로 부활되게 된 것은 종계·부화업의 경우 기존의 신고제로는 생산조절과 양계질병에 대한 대책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종계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질병확산과 불량병아리 양산 등 역효과가 초래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계 일반검정이 종계군마다 신고를 하여 종계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계 일반검정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검정비율이 낮아진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종계·부화인들은 각종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산조절을 통한 양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보다 강력한 허가제로의

전환을 여러차례 요구해 온 바 있으며, 전 양계인들도 등록제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2. 허가제로 시작된 부화업

국내 양계산업에 허가제와 등록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종축의 등록과 검정에 의한 법’이 1977년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양계분야에서는 당해 동법이 입법예고되면서 9개월여 동안 부화장 및 종계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후 9월 24일부터 각 시·도·군에서 일제히 시설점검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법이 처음 시작될 당시 부화장은 허가제, 종계장은 등록제의 규정을 따라야 했으며, 정부에서는 이 법을 제정함에 앞서 수급조절, 국민보건, 국가외화절약 및 자원활용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양계의 경우는 규모 확대 억제 및 위생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시행 당시 국내에는 부실한 부화장과 종계장이 많았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는 양계인들은 이 제도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수자가 잡히지 않아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1977년 10월 경기도에서 부화장을 대상으로 허가 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47개소의 부화장 중 허가대상은 단 2개소 뿐이었으며, 난계대 질병에 따른 질병피해로 일반 실용계 농장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채란업과 육계업도 지난 1984년 8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사육규모도 산란계

의 경우 3만수 이상, 육계의 경우 1만수 이상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이 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로서 1985년부터는 전 양계업종이 등록제와 허가제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같이 전 축산업이 허가·등록제를 적용

받게 된 것은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9년에는 대기업들의 축산업 참여금지를 축산업에 신설하는 등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비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1994년도에는 채란계와 육계의 등록규모가 5만수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지만 실제 사양가들이 제제를 받는 법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허가

표1. 양계업의 허가, 등록, 신고제의 변천

구 분	업 종	'77. 9	'85. 5	'94. 6	'95	'99	2002. 12
등록대상	채란업	미실시	3만수 이상	5만수 이상	5만수 이상 산란계 중후관수 이상	폐지	전 양계업 등록 대상 축산업 제 정, 공포(계란 집하업 포함)
	육계업	미실시	1만수 이상	5만수 이상	5만수 이상	폐지	
	종계업	1천수 이상	1천수 이상	1천수 이상	1천수 이상	신고제	
	부화업	77~94까지 허가제 시행			등록제 전환	전환	
허가대상	부화업						

제이던 부화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9년 1월 29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부화업과 종계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채란업과 육계업은 등록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앞날을 걱정하는 양계인들이 늘어났다. 당시 부화업 종축업의 신고제 전환은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종계·부화인들의 수차례에 걸친 허가제 필요성에 대한 건의에 의해 지난해 12월 26일 등록제에 대한 축산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12월 26일 시행예정을 앞두고 현재 대통령령 및 농림부령이 규정하는 등록대상,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안이 마련중에 있다.

### 3. 외국의 등록제 시행 사례

외국의 양계업 등록제 운용사례를 보면 벨기에의 경우 1980년대부터 소를 시작으로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는 닭을 포함한 모든 가축의 경우 출생시부터 도축때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 등록 토록 함으로써 식품오염이나 질병 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하, 이동이 불가능하고, 만약 법정질병에 의한 폐사시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다. 이 밖에 대만은 지난 1997년 구제역 발생 이후 모든 양돈장에서는 전담수의사를 두고 등록을 하도록 조치해 오고 있으며, 영국은 1998년부터 기록을 증명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사례들

이 있다.

### 4. 등록제에 대한 양계인들의 반응

대다수의 양계인들은 등록제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육수수조절, 위생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 등과 연계한 등록제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채란업계에서는 등록제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파악, 사육수수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현재 이미 과잉생산체제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신규업자의 양성을 최소화시키는 등록제로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육계업계에서도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밀집 사육 증가에 따라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축산업 등록제의 법적 관리를 무조건 환영하고 있다. 특히, 불법병아리인 백세미 관리 소홀로 인한 질병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육계사의 상당부분이 보온덮개 하우스 형식의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화·종계업계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을 때 허가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이유는 질병을 철저히 관리하여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불법병아리 양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한 제재나 관리가 안돼 제도권하에 있는 종계장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 등록제를 통한 확실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계인들이 주장하는 등록규모는 전수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농가도 있으나 종계업의 경우는 최소한 천수 이상, 육계업과 산란계업은 최소한 전업양계 규모 이상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5. 등록제 시행의 발전방안

현재 등록제는 금년말 시행을 앞두고 등록 대상, 등록 기준 및 요건, 등록사항, 등록절차 및 방법,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및 관리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며, 조만간 이(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로운 생산활동 제약, 축산업 종사자의 생산의욕 위축, 정부의 간섭 및 통제 증가에 따른 자율성 훼손 등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나 양계업에 있어서는 고품질의 양계산물 생산, 생산조절 기능, 위생문제 해결,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

지 차원 등 양계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대가축 등 타 축종에서 등록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양계업까지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이며,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종전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은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축산법을 위반하는 자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권리제한을 두어야 하며, 규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이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2는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축산법에 규정된 제재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잘 살펴 업을 영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와 부족한 인력으로는 인해 등록제 업무를 담당키는

표2. 축산업 등록제 관련 제제규정

제재조치	위반행위 등	관련조문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업의 등록을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제44조 제3호, 제4호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45조 제3호 1
등록할 수 없음 (등록결격사유)	-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징역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시부터 1년 미경과자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등록 취소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 대표자가 상기사항 중 1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 2
등록취소또는6개월이내 영업정지 (사전 시정권고, 시정명령조치) ※구체기준은 시행령에 정함	- 등록에 필요한 시설·증장비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연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후 2년간 영업을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0조 4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업 등록자 또는 그 승계자가 영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승계 신고를 않는 경우 -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경우 -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우	제47조

※발췌 : 축산법(등록제 관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현재 고려중)과 같이 생산자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보다는 생산자단체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면 오히려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무허가 축사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등록제 시행은 범법자의 양산과 많은 양계농가들의 폐업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이 법을 적용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록제와 관련하여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축산업 등록제'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산업 등록제

가 축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하고, 축산업 등록제가 생산을 규제하거나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성이나 친환경축산, 무허가 축사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한, 등록제의 시행주체는 기본적으로 법상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시행하도록 나와 있으나 시군 축산공무원이 적어 애로가 많다는 점도 인식해 가급적 생산자 단체와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양계인들은 양계업 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문화된 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경우 양계업의 등록제 정착으로 안정적인 양계산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